파주시 공고 제2026-2959호

의료급여 진료비(부당이득금)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진료비(부당이득금) 환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13.

파주시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진료비(부당이득금)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1. 13. ~ 11. 27.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 금액(원)	반송사유	비 고
송○우	경기도 파주시 **면 ***길 ***, ***호	6,840,550	폐문부재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통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진료비(부당이득금) 환수 통지하오니, 파주시 복지지원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 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6. 12.14.(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처** : 파주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031-940-5016)